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허4907 등록무효(디)

원 고 형제산업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대덕에이치에이엠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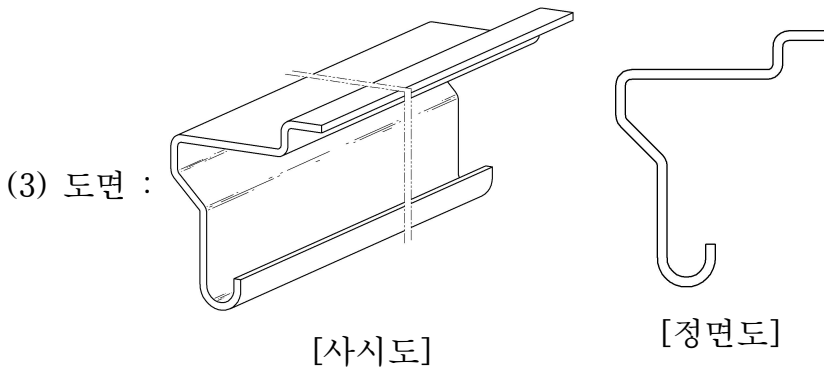
특허심판원이 2017. 6. 1. 2015당356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504163호/2008. 3. 5./2008. 8. 27.
- (2) 물품의 명칭 :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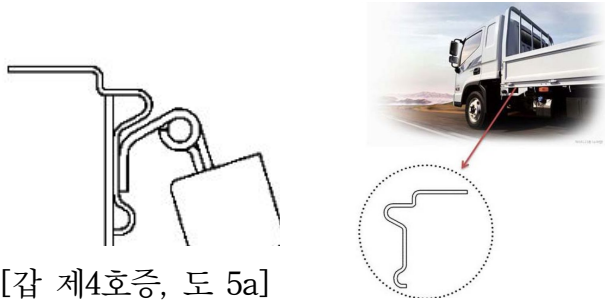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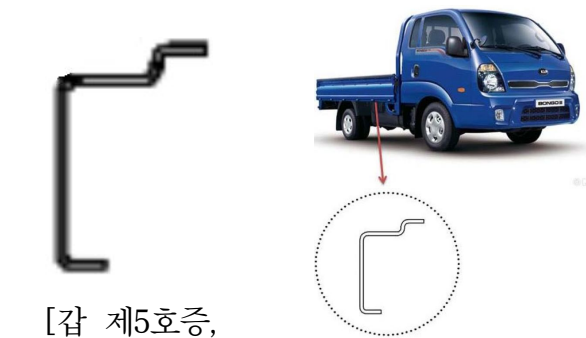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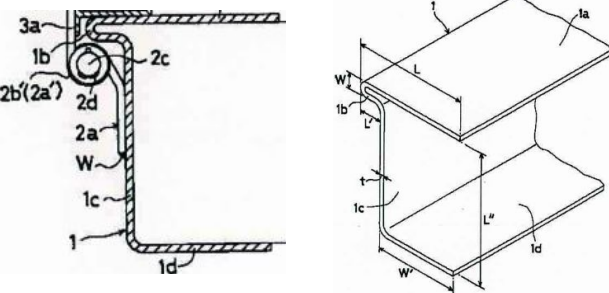

- (4) 디자인의 설명 :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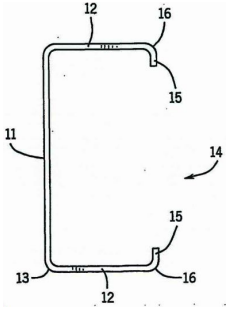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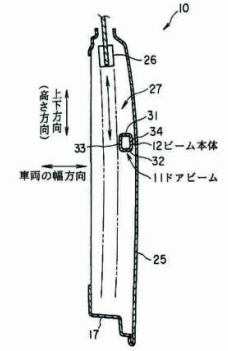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로서, 선행디자인 1 내지 5는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에 관한 것이고, 선행디자인 6은 '차량의 도어 빔'에 관한 것이다.

각 선행디자인의 출처와 도면은 아래 표와 같다.

선행 디자인	출처	도면
-----------	----	----

<p>1</p>	<p>① 갑 제4호증: 공개특허 공보 제10-2006-87676호 (2006. 8. 3. 공개) ② 원고의 구술변론자료 8면</p>	 <p>[갑 제4호증, 도 5a]</p>
<p>2</p>	<p>① 갑 제5호증 : 공개특허 공보 제10-2006-67604호 (2006. 6. 20. 공개) ② 원고의 구술변론자료 10 면</p>	 <p>[갑 제5호증, 도 4]</p>
<p>3</p>	<p>갑 제6호증 : 일본 등록실용 신안공보 제3038748호 (1997. 4. 9. 등록)</p>	 <p>[도 2] [도 3]</p>
<p>4</p>	<p>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 차량 윙바디 사진 (2006. 6. 26. 국내 공연 실 시)</p>	 <p>[사진 2-1]</p>

5	갑 제8호증 : 유럽 등록특 허공보 제1,412,542 B1호 (2004. 4. 28. 공개)	 <p>[도 2]</p>
6	갑 제9호증 : 일본 특허공 보 제3779335호 (1995. 4. 4. 공개)	 <p>[도 1]</p>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6. 1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5당3562)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6.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사

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주로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부분들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될 수 없다.

- '메인프레임부'에 형성된 '단턱 부분'은 그 기능상 필연적으로 화물적재함 상면의 형상에 따라 그와 같은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측면프레임부'의 '절곡 부분'은 힌지의 돌출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사이드게이트를 그만큼 외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보강부'는 더 강한 강도를 갖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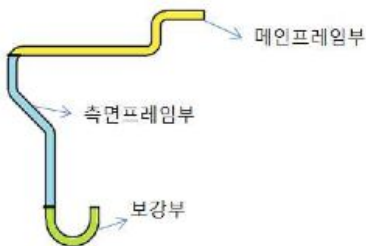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 즉, 위와 같이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한 부분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4, 5, 6 중 어느 하나의 결합,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 또는 선행디자인 1, 2와 선행디자인 4, 5, 6 중 어느 하나의 결합, 선행디자인 2, 3의 결합 또는 선행디자인 2, 3과 선행디자인 4, 5, 6 중 어느 하나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및 특징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에 관한 것으로, 메인프레임




[정면도]

부, 측면프레임부, 보강부로 구성되어 있다(좌측 [정면도] 참


조). '메인프레임부'는 우측으로 길게 수평으로 형성되다가

상향으로 단턱이 형성된 '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이고, '측면프레임부'는 안쪽(차량에 설치시 차체 안쪽

방향)으로 경사지게 절곡되고 절곡지점 이하로는 하향으로 수직된 '  '와 같은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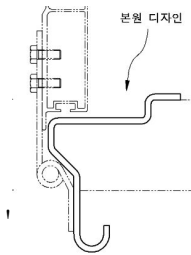
과 모양이며, '보강부'는 하향으로 수직된 측면프레임 끝단에 'U'자형으로 굽어진

'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이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메인프레임부, 측면프레임

부, 보강부를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면서, 메인프레임부가 우측으로 길게 수평으로 형

성되다가 상향으로 단턱이 형성되고, 측면프레임부는 안쪽으로 절곡되어 있되, 절곡지점 이하로 하향으로 수직되게 형성되어 있으며(그 결과 메인프레임에서 측면프레임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C'와 같이 각진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있다), 측면프레임부 끝단에 'U'자형의 보강부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이다.

디자인에 있어서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주는 심미감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은



'와 같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는 그 물품이 설치되는 화물차량 적재함의 구조, 물품의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물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디자인들과의 대비 및 평가

(가) 메인프레임부의 형상과 모양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메인프레임부에 있어 단턱의 유무(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2의 메인프레임에는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3 내지 6의 메인프레임부에는 단턱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단턱의 위치(선행디자인 1의 단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2의 단턱에 비해 상대적

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등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은 각 디자인들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메인프레임부에 형성된 단턱 부분은 그 기능상 필연적으로 화물적재함 상면의 형상에 따라 그와 같은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에 관한 디자인에서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부분들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의 메인프레임부에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단턱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그 형성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단턱의 형성 유무 및 위치가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의 본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메인프레임부에서 단턱의 형상과 모양이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측면프레임부의 형상과 모양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측면프레임부에 있어 절곡 부분의 유무(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3의 측면프레임부에는 절곡 부분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 4, 5, 6의 측면프레임부에는 절곡 부분이 없다), 절곡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 3의 측면프레임부 절곡 부분의 형상과 모양은 각기 다르다) 등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은 각 디자인들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측면프레임부의 절곡 부분은 힌지의 돌출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사이드게이트를 그만큼 외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에 관한 디자인에서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부분들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의 측면프레임부에 절곡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절곡 부분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다양한 형상과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절곡 부분의 형성 유무 및 그 형상과 모양이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의 본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물품의 본래 기능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과 효과를 고려하여 창작한 부분까지도 기본적·기능적 형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측면프레임부에서 절곡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보강부의 형상과 모양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에서 보강부는 'U'형, 'C'형, 'L'형,



등의 다양한 형상과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하향으로 수직된 측면프레임 끝단에 'U'자형으로 굽어진 'U'형과 같은 형상과 모양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불러일으켜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가져온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강부는 더 강한 강도를 갖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는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에 관한 디자인에서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부분들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보강부는 그 자체로 메인프레임부, 측면프레임부와 함께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의 기본적 구성에 해당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이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거나 대체가능성이 없는 형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보강부는 다양한 형상과 모양으로 형성 가능하다), 이를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공지부분에 대한 평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중 메인프레임부가 우측으로 길게 수평으로 형성되다가 상향으로 단턱이 형성된 형상과 모양은 선행디자인 2에 공지되어 있고, 측면프레임부가 안쪽으로 절곡된 구성은 선행디자인 1, 3에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된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메인프레임부가 우측으로 길게 수평으로 형성되다가 상향으로 단턱이 형성되고, 측면프레임부는 안쪽으로 절곡되어 있되, 절곡지점 이하로 하향으로 수직되게 형성되어 있으며(그 결과 메인프레임에서 측면프레임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와 같이 각진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있다), 측면프레임부 끝단에 와 같은 'U'자형의 보강부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이상, 그 중 메인프레임부와 측면프레임부의 일부 구성이 각각 공지된 바 있다는 이유로 그 공지부분들만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3) 검토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메인프레임부, 측면프레임부, 보강부를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면서도, 위 각 구성의 형상과 모양을 일부 변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 분야에서 메인프레임부, 측면프레임부, 보강부 등 기본적인 구성은 그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기본적인 형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각각의 구성에서 각기 다른 형상과 모양을 취하는 것은 선행디자인들과의 대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분야 디자인에서 지배적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메인프레임부가 와 같이 우측으

로 길게 수평으로 형성되다가 상향으로 단턱이 형성되고, 측면프레임부는 안쪽으로 절곡되어 있되, 절곡지점 이하로 하향으로 수직되게 형성되어 있으며(그 결과 메인프레임

에서 측면프레임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와 같이 각진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있다),

측면프레임부 끝단에 와 같이 'U'자형의 보강부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메인프레임부가 우측으로 길게 수평으로 형성되다가 상향으로 단턱이 형성되고, 측면프레임부는 안쪽으로 절곡되어 있되, 절곡지점 이하로 하향으로 수직되게 형성되어 있으며, 측면프레임부 끝단에 'U'자형의 보강부가 형성되어 결합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선행디자인 1과의 동일·유사 여부)

(1) 대상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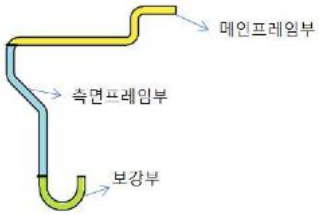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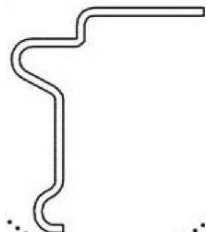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차량 화물적재함 용 프레임'이므로,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2) 디자인의 유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메인프레임부가 우측으로 길게 수평으로 형성되다가 상향으로 단턱이 형성되고, 측면프레임부는 안쪽으로 절곡되어 있되, 절곡지점 이하로 하향으로 수직되게 형성되어 있으며, 측면프레임부 끝단에 'U'자형의 보강부가 형성되어 결합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다.


이러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정면도를 중심으

로 선행디자인 1과 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대비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위 대비표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메인프레임부는 우측으로 길게 수평으로 형성되다가 상향으로 단턱이 형성된 '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메인프레임부에서 측면프레임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

게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부는 'U'자형으로 굽어진 '

위 차이점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내지 요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전체적인 심미감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대비할 때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선행디자인 1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선행디자인들에 의한 용이 창작 여부)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2) 대상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선행디자인 1 내지 5는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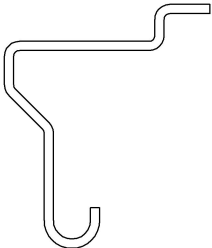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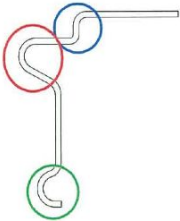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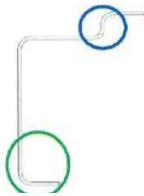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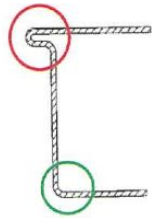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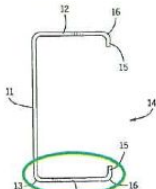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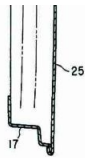
등록디자인과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선행디자인 6은 '차량의 도어 빔'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그 분야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선행디자인 6의 보강부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부와 마찬가지로 차량 프레임의 일부에 있어 더 강한 강도를 갖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 및 용도에 유사한 점이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에 관한 디자인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그 대상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지배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정면도를 중심으로 각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대비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p>선행디자인 4</p> 	<p>선행디자인 5</p> 	<p>선행디자인 6</p>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메인프레임부의 형상과 모양인 '

인 2의 메인프레임부인 '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메인프레임부에서 측면프레임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부는 수직된 측면프레임 끝단에 'U'자형으로 굽어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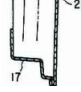
위 차이점들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메인프레임부에서 측면프레임부로 이


어지는 '

- 16 -

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

다(선행디자인 6 중 일부 형상과 모양인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부와 다소 유사하기는 하지만, 선행디자인 6에서 보강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직된 측면

프레임 끝단에 형성된 와 같은 형상과 모양 전체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

강부의 형상과 모양과는 차이가 있고, 단지 그 보강부의 맨 끝 부분에 형성된  부분 중 'U'자형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주목하여 떼어내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대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통상의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성 중 메인프레임부는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메인프레임부에서 측면프레임부로 이어지는 부분 및 보강부 등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므로, 선행디자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나상훈
	판사	이호산

[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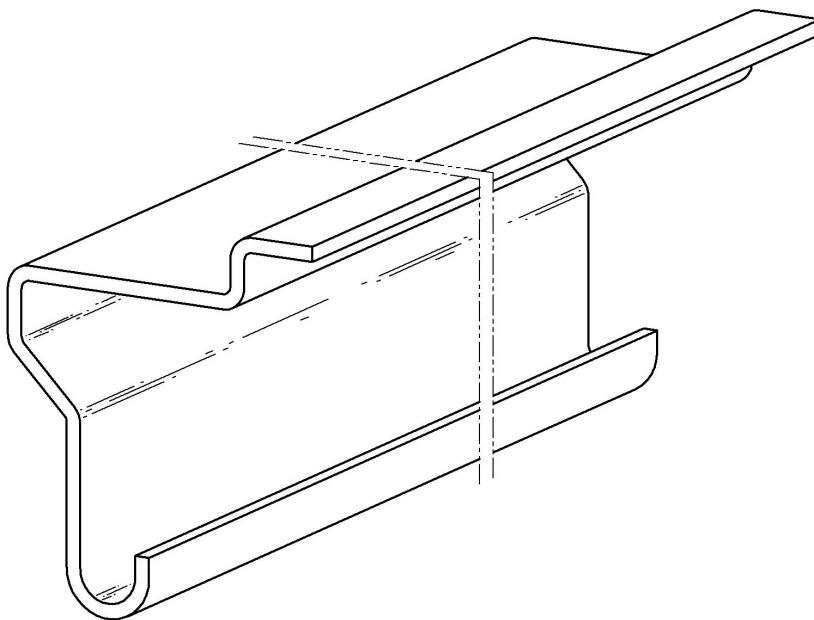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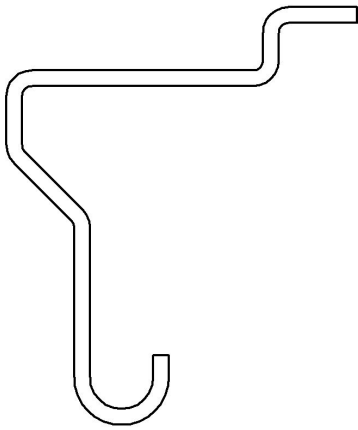
1. 재질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원디자인은 좌/우 방향으로 연속되는 것임.
3. 본 물품은 사용되는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따라 길이가 약 1m ~ 20m 정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 길이로 절단되어 사용되는 것임.
4. 참고도 1은 본 물품의 참고 결합 정면도를 나타내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차량 화물적재함용 프레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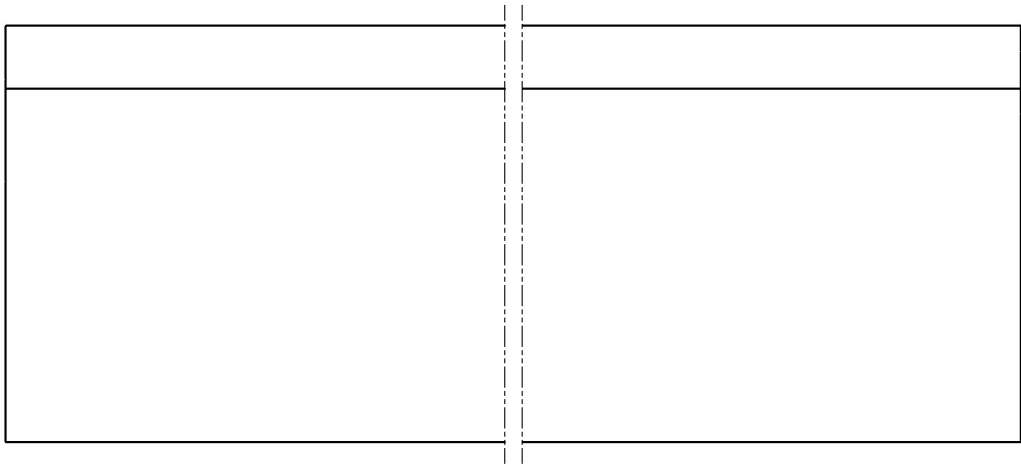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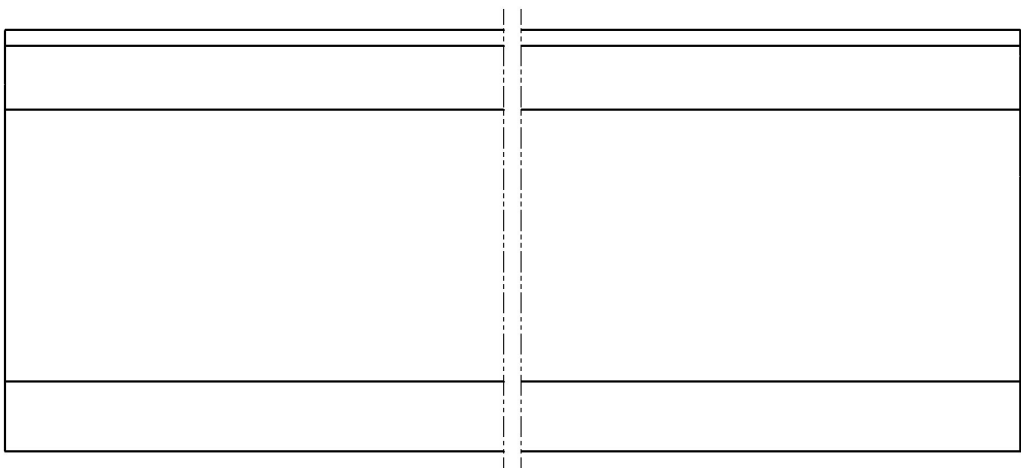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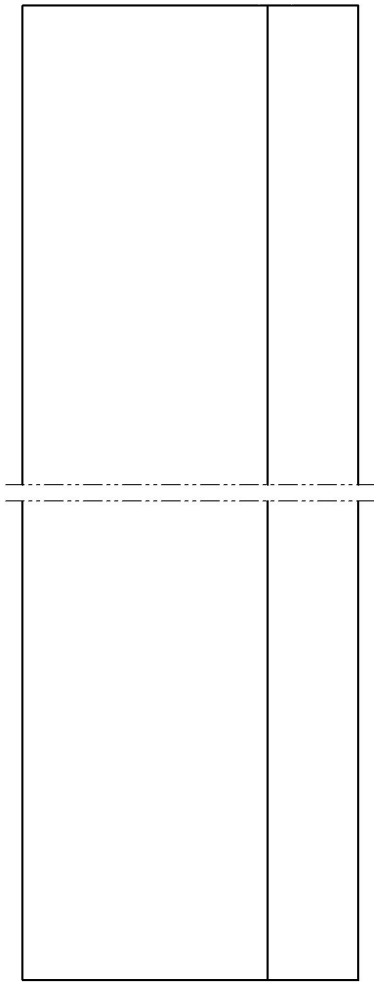
[배면도] 정면도와 대칭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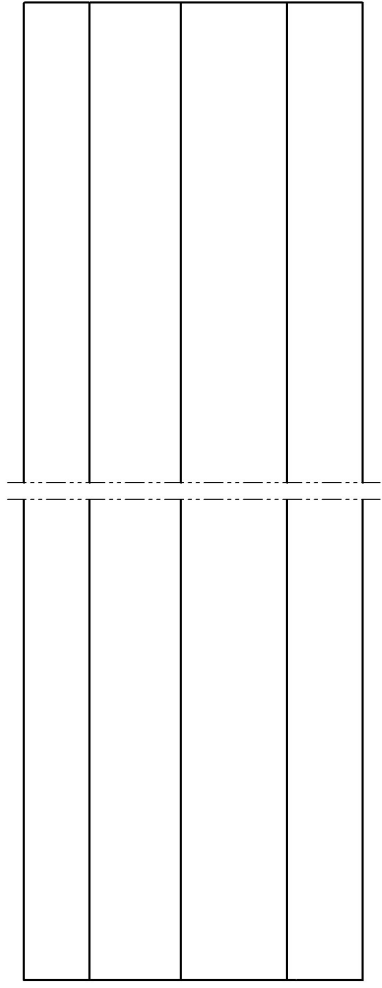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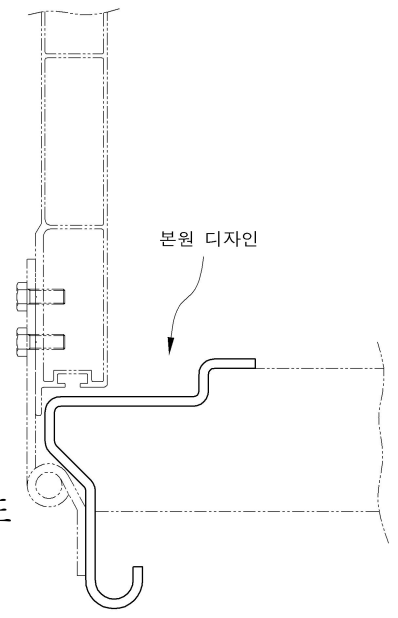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사용 상태도